

목포시의회 공고 제2024-61호

##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

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- 일 시 : 2024년 8월 26일(월요일) 오전 11시
- 장 소 : 목포시의회 본회의장

2024년 8월 20일

목 포 시 의 회 의

